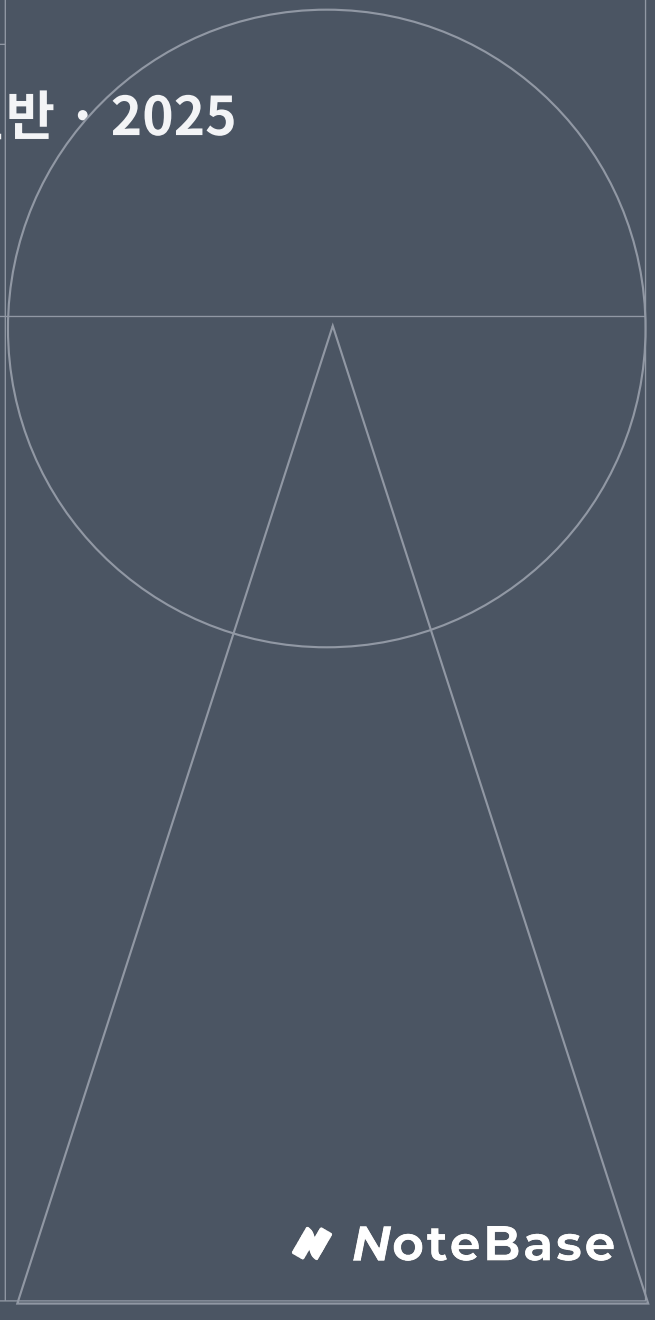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5

공무원/계리직/9급 · 예금일반 · 2025

1. 실질금리가 가장 높은 국가는?

국가	물가상승률 (연, %)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명목금리 연, %)
A	−3.0	3.0
B	−2.0	2.0
C	3.0	2.0
D	4.0	1.0

① A ② B ③ C ④ D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명목금리와 물가상승률을 이용해 실질금리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물가상승률이 음수인 디플레이션에서는 그 음수를 빼므로 실질금리가 명목금리보다 높아진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각 국가의 연 물가상승률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연 명목금리이다.
구해야 할 값: 실질금리가 가장 높은 국가이다.
주의할 조건: A와 B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3.0%, −2.0%이므로 음수 부호를 그대로 반영한다.

사용할 공식

근사식은 실질금리 ≈ 명목금리-물가상승률이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예금의 실제 구매력 증가율을 비교하는 문제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정확한 식 $1 + r = (1 + i)/(1 + \pi)$을 사용해도 국가별 순위는 같다.

NoteBase

계산 과정

A: 3.0% − (−3.0%) = 6.0%
B: 2.0% − (−2.0%) = 4.0%
C: 2.0% − 3.0% = −1.0%
D: 1.0% − 4.0% = −3.0%
따라서 실질금리는 A가 가장 높다. 정확한 식으로 계산해도 A 약 6.19%, B 약 4.08%, C 약 −0.97%, D 약 −2.88%로 순위가 동일하다.

선지 판단

① A O — A의 실질금리는 근사적으로 6.0%로 네 국가 중 가장 높다.
② B X — B의 실질금리는 근사적으로 4.0%이므로 가장 높지 않다. ‘B가 가장 높다’는 표현은 ‘A가 가장 높다’로 고쳐야 한다.
③ C X — C의 실질금리는 근사적으로 −1.0%이므로 가장 높지 않다. ‘C가 가장 높다’는 표현은 ‘A가 가장 높다’로 고쳐야 한다.
④ D X — D의 실질금리는 근사적으로 −3.0%이므로 가장 높지 않다. ‘D가 가장 높다’는 표현은 ‘A가 가장 높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A와 B의 물가상승률 앞에 붙은 음수 부호를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A는 3.0 − 3.0이 아니라 3.0 − (−3.0)으로 계산한다. 또한 명목금리만 보면 A가 3.0%로 가장 높지만,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물가 변동까지 반영해 네 국가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별로 ‘명목금리−물가상승률’을 계산한 뒤 가장 큰 값을 찾는다. 물가상승률이 음수이면 음수를 빼는 계산이 되어 실질금리가 커진다는 점까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실질금리 ≈ 명목금리−물가상승률이며,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를 높인다.

NoteBase

2. 저축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은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ㄴ. 단기금융상품펀드(MMF)는 입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체 및 결제는 할 수 없다.
ㄷ. 정기예탁금은 거치식 예금상품으로 우체국, 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한다.
ㄹ. 양도성예금증서(CD)는 만기 후에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 지급하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MMDA, MMF, 정기예탁금, 양도성예금증서(CD)의 상품 성격과 취급기관 및 예금자보호 여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예금과 실적배당상품을 구분하고, CD가 할인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금액으로 상환되며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예금자보호 = 보호 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정 한도 안에서 예금보험 관계 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할인 발행 = 만기에 받을 액면금액에서 이자 상당액을 미리 뺀 가격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MMDA는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약정된 방식의 이자를 받으며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다. MMF는 CP, CD,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받는 펀드로, 가입과 환매는 자유롭지만 펀드 자체에 은행예금과 같은 직접 이체·결제 기능은 없다. 정기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지만 상호금융·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고, 우체국과 은행은 정기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CD는 할인 발행되므로 만기에 별도 이자를 더하지 않고 액면금액을 지급하며,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상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MMDA는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라 수시입출금식 예금이고, 정기예탁금의 취급기관에 우체국과 은행을 포함한 것도 잘못이다. 틀린 조합 'ㄱ, ㄷ'은 'ㄴ,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ㄹ은 맞지만 ㄱ이 틀리다. ㄱ의 '실적배당 상품'은 '시장금리에 연동해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ㄱ, ㄹ'이 아니라 'ㄴ, ㄹ'이 옳다.
③ X — ㄴ은 맞지만 ㄷ이 틀리다. MMF는 가입·환매를 통한 자금 인출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펀드 자체의 직접 이체·결제 기능은 없다. ㄷ의 '우체국, 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한다'는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한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ㄴ, ㄷ'이 아니라 'ㄴ, ㄹ'이 옳다.
④ O — ㄴ과 ㄹ이 모두 맞다. MMF는 환매가 자유로운 실적배당 펀드이지만 그 자체로 이체·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예금계좌는 아니다. CD는 이자 상당액을 미리 할인한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금액만 지급되고 예금자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오답 포인트

ㄱ에서는 이름에 'Deposit Account'가 들어가는 MMDA를 MMF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착각하기 쉽다. ㄷ에서는 정기예탁금과 정기예금을 같은 명칭으로 보고 우체국과 은행까지 취급기관에 넣기 쉽다. ㄹ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 지급'은 수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이 발행 시 할인으로 미리 반영된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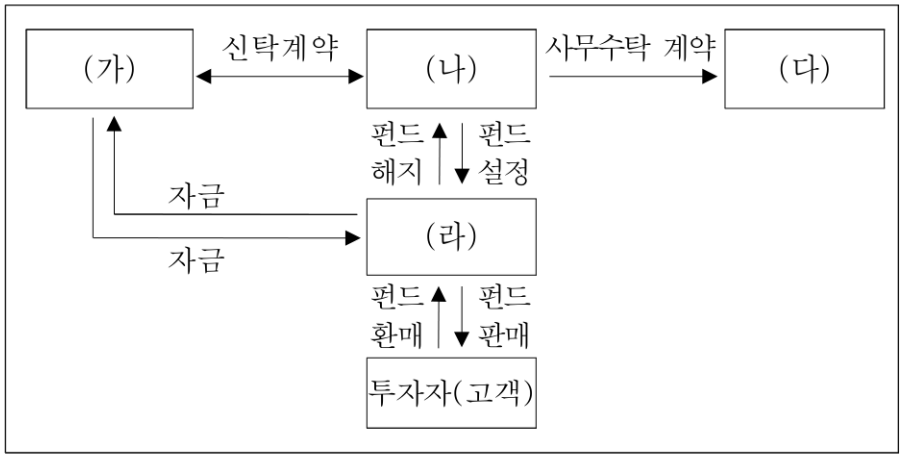
먼저 상품이 예금인지 펀드인지 구분한다. 다음으로 수익 지급 방식이 약정이자인지 실적배당인지, 직접 이체·결제가 가능한지, 취급기관이 은행권인지 협동조합 금융기관인지,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순서대로 확인한다. CD는 '할인 발행 → 만기 액면상환 → 예금자보호 제외'로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MMDA는 예금, MMF는 펀드, 정기예탁금은 협동조합 금융기관, CD는 할인 발행·액면상환·예금보호 제외이다.

NoteBase

3. 펀드의 운용 구조에서 (가) ~ (라)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는 펀드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ㄴ. (나)는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ㄷ. (다)는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ㄹ. (라)는 수익증권 발행 업무 등의 역할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 3번

출제 포인트

펀드 운용 구조의 계약 관계와 자금 흐름을 보고 각 회사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도식에서 (가)는 수탁회사, (나)는 자산운용회사, (다)는 사무관리회사, (라)는 판매회사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이 모두 옳다. (가) 수탁회사는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여 펀드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나)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다.

② X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라)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발행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접수하는 회사이다. 따라서 ㄹ은 '(라)는 펀드의 판매·환매 업무를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ㄴ과 ㄷ이 모두 옳다. (나)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다) 사무관리회사는 펀드 회계와 기준가격 산정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다) 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을 산정하지만, (라) 판매회사의 역할은 수익증권 발행이 아니라 펀드의 판매·환매 업무이다. 따라서 ㄹ을 '(라)는 펀드의 판매·환매 업무를 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므로 수익증권 자체를 발행한다고 혼동하기 쉽다. 도식에서 (라)는 투자자와 펀드 판매·환매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판매회사이며, ㄹ의 '수익증권 발행'이 틀린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탁계약의 상대방은 수탁회사, 펀드 설정·운용의 주체는 자산운용회사, 기준가격 산정은 사무관리회사, 투자자와 직접 판매·환매하는 주체는 판매회사로 대응시킨다. 각 보기의 구성 문장이 모두 옳은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수탁회사는 보관·관리, 자산운용회사는 설정·운용, 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산정, 판매회사는 판매·환매를 담당한다.

NoteBase

4. 다음 설명에 맞는 채권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특정한 금융회사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이다.
(나) 채권 발행 당시에 비해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 발행 회사가 기존 고금리 채권을 상환하고 저금리 채권을 새로 발행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채권이다.

	(가)	(나)
①	특수채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②	특수채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puttable bond)
③	금융채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④	금융채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puttable bond)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채권을 발행 주체에 따라 분류하는 금융채의 개념과, 조기상환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조기상환권부채권·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금융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수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가운데 금융채를 제외한 채권이다.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발행 회사가 만기 전에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발행 회사가 기존 고금리 채권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다시 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puttable bond): 채권자가 만기 전에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가)를 '특수채'로 짝지은 부분이 틀렸다. 금융회사가 발행하여 그 회사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 되는 채권이므로 올바르게는 '금융채'이다. (나)의 조기상환권부채권은 옳다.
② X — (가)의 '특수채'와 (나)의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는 '금융채', (나)는 발행 회사가 상환 여부를 선택하는 '조기상환권부채권'이다.
③ O — (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이고, (나)는 금리 하락 시 발행 회사가 고금리 채권을 조기 상환하고 저금리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조기상환권부채권이다. 두 설명이 모두 바르게 짝지어졌다.
④ X — (나)를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으로 짝지은 부분이 틀렸다. 조기변제요구권은 채권자가 행사하지만, 제시문에서는 발행 회사가 기존 채권을 상환하므로 올바르게는 '조기상환권부채권'이다. (가)의 금융채는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②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이라는 표현만 보고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까지 특수채로 오인하게 한다. 또한 ②·④는 조기 상환을 요구하거나 결정하는 주체가 채권자인지 발행 회사인지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발행 주체를 확인한다. 특별법상 금융회사가 발행하면 금융채이다. 다음으로 조기 상환 권리의 주체를 확인한다. 발행 회사가 상환하면 callable bond,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면 puttable bond이다.

암기 포인트

금융회사 발행은 금융채, 발행 회사가 부르면(call) 조기상환권부채권, 채권자가 되팔면(put)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이다.

NoteBase

5. 기업 재무비율 분석 및 주가배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동성지표는 기업이 보유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산회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

② 주가장부가치비율(PBR)은 시장가치의 주가를 장부가치의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③ 현재 수익은 작아도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일반적으로 주가이익비율(PER)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④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주주의 몫인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기업의 유동성·활동성·수익성 지표와 주가배수의 정의 및 산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동성지표: 기업이 단기채무를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자산회전율: 자산을 이용해 매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활동성지표이며, 일반적으로 매출액평균 총자산으로 계산한다.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가가 주당순자산의 몇 배인지 나타내며, 주가주당순자산으로 계산한다.
주가이익비율(PER):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지 나타내며, 성장 기대가 높을수록 높아질 수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가 제공한 자기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수익성지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유동성지표'와 '자산회전율 = 영업이익/총자산'이라는 표현이 모두 틀렸다. 자산 활용도를 보는 자산회전율은 활동성지표이며, 일반적으로 매출액평균 총자산으로 계산한다. 유동성지표는 단기채무 상환능력을 측정한다.
② O — PBR은 주가를 주당 장부가치인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주가주당순자산이다.
③ O —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현재 이익이 작더라도 미래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어 PER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
④ O — ROE는 자기자본 대비 이익의 비율로,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한 효율성을 보여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라는 설명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지표의 분류와 분자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산회전율은 유동성지표가 아니라 활동성지표이고, 분자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환능력은 유동성, 매출 창출 효율은 활동성, 이익 창출 효율은 수익성으로 구분한다. 또한 PBR은 주가와 주당순자산, PER은 주가와 주당순이익, ROE는 이익과 자기자본의 관계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유동성은 단기상환, 회전율은 매출, 수익률은 이익이다. PBR은 장부가치, PER은 이익, ROE는 자기자본과 연결된다.

NoteBase

6. 우체국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우체국 금융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우편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②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예금사업·보험사업 특별회계로 분리하였다.

③ 우체국 예금의 타인 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 부채 및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차입 부채가 있다.

④ 우체국 금융의 사업상 이익 발생 시 이익금 중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귀속하고 있으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도 출연하고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정사업의 회계 구분, 우체국예금의 자본 조달 구조, 우체국금융 이익의 공적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우체국예금과 일반은행의 부채 조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예수부채 =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장차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우체국예금이 부담하는 부채이다.
차입부채 = 금융기관 등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 조달함으로써 생기는 부채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4조에 따르면 우체국예금의 타인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가 있고,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에 따른 차입부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은행채 발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부채는 없다. 또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정사업의 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기금 출연을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우체국금융은 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과 우편사업을 지원하며,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다. 따라서 우체국금융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우편사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는 우정사업의 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선지의 세 가지 회계 구분은 이에 부합한다.

③ X
우체국예금의 타인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가 있고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에 따른 차입부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은행과 달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부채는 없다.
틀린 표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차입부채가 있다'
올바른 표현: '타인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가 있고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에 따른 차입부채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은행채 발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부채는 없다.'

④ O
우체국금융은 경영 성과의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다. 따라서 국가 재정 귀속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관한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일반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를 우체국예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함정이다. 우체국예금은 예수부채는 보유하지만, 은행채 발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차입부채는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체국예금과 일반은행을 비교하는 선지에서는 주식 발행 여부, 타인자본의 구성, 여신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특히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차입부채'가 우체국예금에도 있다고 단정하면 틀린 설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체국예금의 타인자본은 예수부채가 원칙이며, 일반 금융기관 차입부채는 없다.

NoteBase

7. 예금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은행(우체국)은 그 압류의 사실을 예금주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
ㄴ. 압류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은행(우체국)은 질권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
ㄷ. 추심명령은 예금채권의 추심권을 제3채무자에게 부여하여 직접 추심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ㄹ. 예금주에게 여러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로 있는 경우, 집행채권의 총액보다 예금총액이 하회한다면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예금채권의 압류와 추심명령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압류사실 통지의 성격, 추심권을 얻는 주체, 예금액 부족이 압류명령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제3채무자 =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예금채권 압류에서는 은행이나 우체국이 이에 해당한다.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고 받아 낼 수 있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질권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재산이나 권리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권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예금주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주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은행의 실무처리에서는 예금주와 질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압류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예금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주체는 제3채무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이다.
ㄱ X: 예금주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은 법원이 하므로 은행에 법률상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ㄴ O: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라면 은행은 이해관계인인 질권자에게도 압류사실을 알리는 실무처리가 필요하다.
ㄷ X: 추심권은 제3채무자가 아니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된다.
ㄹ X: 예금총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적더라도 압류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존재하는 예금채권의 범위에서 효력이 생기고 채권이 일부만 만족될 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ㄴ만 옳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② X
- ㄱ과 ㄷ은 모두 옳지 않고, 옳은 ㄴ이 빠져 있다. 은행 자체에 예금주 통지의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에게 부여된다.
- 틀린 표현: ㄱ, ㄷ
- 올바른 표현: ㄴ만 옳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예금총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틀린 표현: ㄴ, ㄹ
- 올바른 표현: ㄴ만 옳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ㄷ과 ㄹ은 옳지 않다. 추심권자는 압류채권자이고, 예금액 부족은 압류명령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다.
- 틀린 표현: ㄴ, ㄷ, ㄹ
- 올바른 표현: ㄴ만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ㄱ의 ‘법적 의무’와 ㄴ의 ‘통지할 필요’를 같은 뜻으로 보면 틀리기 쉽다. 법원이 하는 법정 송달과 은행이 이해관계인에게 하는 실무상 통지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ㄷ은 추심권의 주체를 제3채무자로 바꾸었고, ㄹ은 채권의 일부 만족에 그치는 경우를 압류명령의 무효로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금압류 문제에서는 먼저 법원·압류채권자·예금주·제3채무자의 역할을 나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송달하고, 은행은 제3채무자가 되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예금을 추심한다. 예금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압류의 무효가 아니라 회수액 부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송달은 법원, 지급금지는 은행, 추심은 압류채권자, 잔액 부족은 일부 만족이다.

NoteBase

8. 내부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금융회사 내 모든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일련의 통제 활동이다.

② 준법의 목적, 보고의 목적, 운영의 목적을 각각의 부서가 달성함으로써 전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③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모니터링은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를 업무별·종류별로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내부통제의 목적과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위험평가와 모니터링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부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수행하는 지속적인 통제 과정이다. 주요 목적은 준법, 신뢰성 있는 보고, 효율적·효과적인 운영이며, 이를 위해 통제환경·위험평가·통제활동·정보와 의사소통·모니터링 등의 요소가 작동한다.
위험평가는 조직이 직면한 위험을 식별하고 측정·분석하는 과정이고, 모니터링은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설계·운영되는지를 지속적 또는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내부통제는 조직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 모든 구성원이 수행하는 일련의 통제 활동이다.
② O — 각 부서가 준법 목적, 보고 목적, 운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내부통제의 기능이다.
③ O —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준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통제 장치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모니터링을 '리스크를 업무별·종류별로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위험평가에 해당한다. 모니터링은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점검·평가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의 '정기적으로 측정·분석'이라는 표현 때문에 모니터링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무엇을 측정·분석하는지가 핵심이다. 리스크 자체를 식별·측정·분석하면 위험평가이고,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 상태를 점검·평가하면 모니터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평가 대상을 확인한다. 위험을 대상으로 식별·측정·분석하면 위험평가이고, 내부통제의 적정성·효과성과 미비점 개선 여부를 대상으로 점검하면 모니터링이다.

암기 포인트

위험평가는 리스크를 찾고 재며, 모니터링은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 살핀다.

NoteBase

9. 예금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②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하여 예금(이자 포함) 전액을 보호한다.

③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 보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④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 및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은 보호금액한도 내에서 전액 보호받고, 대출금은 차후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대비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목적, 우체국예금의 보호 근거, 예금보험공사의 재원 조달 및 대출이 있는 예금자의 보험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핵심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와 국가의 지급 책임을 구별하고, 보험금 산정 시 예금채권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먼저 빼는 점을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부보금융회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이다.
예금보험금 = 부보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그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이다.

핵심 구분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를 보호하며, 예금보험공사가 제도를 운영한다.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진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에 따르면 보험금은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보호한도 내에서 계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설명으로, 예금자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② O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책임지므로 예금 전액이 보호된다.

③ O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 등을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④ X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으면 예금 전액을 먼저 보호한 뒤 대출금을 예금보험공사에 갚는 것이 아니다.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의 예금등 채권 합계액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 합계액을 먼저 뺀 뒤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틀린 표현: 예금은 보호금액한도 내에서 전액 보호받고, 대출금은 차후 예금보험공사에 상환해야 한다.
올바른 표현: 예금등 채권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채무를 먼저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오답 포인트

④의 함정은 예금채권과 대출채무를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과 대출이 있으면 대출채무를 공제한 순예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며, 대출금의 상환 상대방이 예금보험공사로 단순히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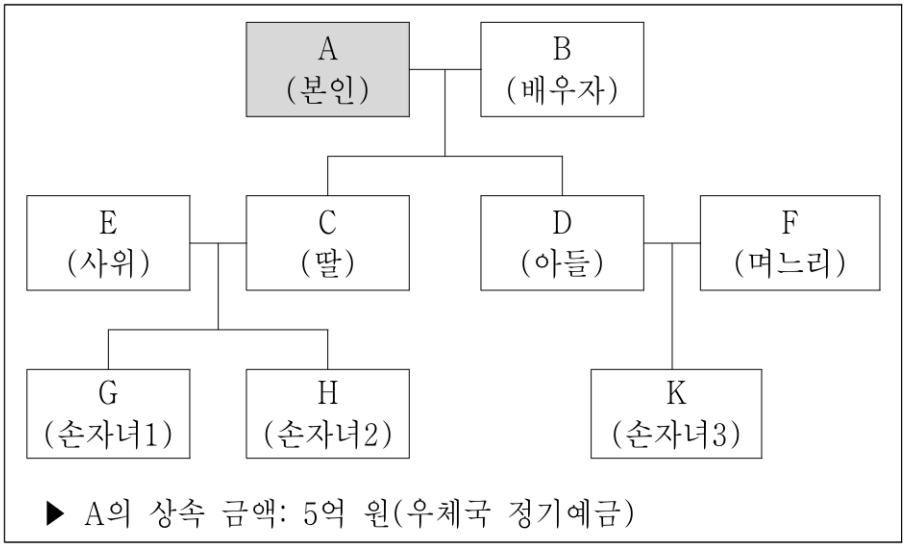
보호 주체와 보험금 계산 순서를 나누어 판단한다. 일반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 예금과 대출이 함께 제시되면 먼저 예금등 채권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빼고, 그다음 보호한도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우체국은 국가 책임, 일반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보호,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으면 채무 공제 후 한도를 적용한다.

NoteBase

10. 다음 A의 기준으로 표기한 상속 가계도로 볼 때 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C는 A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D는 A의 사망 후 즉시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 외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E와 F의 상속비율과 상속재산은 동일하다.

② 공동상속인 중 대습으로 상속받는 상속인은 총 3명이다.

③ D가 즉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은 총 6명이다.

④ D의 상속 포기로 F와 K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대습상속의 요건과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상속개시 전 사망은 대습상속의 원인이지만 상속개시 후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용어 풀이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법정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제도이다. 피대습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 =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NoteBase

사례 정리

A보다 먼저 사망한 C의 자리에는 C의 배우자 E와 자녀 G·H가 대습상속인으로 들어간다. A의 배우자 B도 공동상속인이다. 반면 A가 사망한 뒤 D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D의 배우자 F와 자녀 K가 D를 대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종 공동상속인은 B·E·G·H의 4명이고, 이 가운데 대습상속인은 E·G·H의 3명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C처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며, 민법 제1042조와 제1043조에 따라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그러므로 D의 포기로 F와 K가 새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E는 C가 A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F는 D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E는 상속재산을 받지만 F는 받지 않으므로 두 사람의 상속비율과 상속재산은 동일하지 않다.
틀린 표현: E와 F의 상속비율과 상속재산은 동일하다.
올바른 표현: E는 대습상속인이지만 F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상속비율과 상속재산은 동일하지 않다.

② O
공동상속인 B·E·G·H 가운데 C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사람은 C의 배우자 E와 직계비속 G·H이므로 대습상속인은 총 3명이다.

③ X
D의 상속포기로 F와 K가 D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 공동상속인은 B·E·G·H의 4명이다.
틀린 표현: 공동상속인은 총 6명이다.
올바른 표현: 공동상속인은 총 4명이다.

④ X
D의 상속포기는 F와 K를 A의 상속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전제로 하므로 A의 상속인이 아닌 F와 K는 이 사안에서 A의 재산에 관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린 표현: F와 K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올바른 표현: F와 K는 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서 A의 재산에 관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상속포기를 상속개시 전 사망과 같은 대습상속 사유로 오인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C의 사망은 E·G·H의 대습상속을 발생시키지만, D의 상속포기는 F·K의 대습상속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인물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했는지를 구분한다. 선사망이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일정한 경우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검토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포기이면 포기자의 가족을 추가하지 않고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그 지분을 배분한다.

암기 포인트

선사망은 대습, 상속포기는 대습 아님이다. 이 사안의 최종 공동상속인은 B·E·G·H, 대습상속인은 E·G·H이다.

NoteBase

1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 등급을 평가하고, 그 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에서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 하여 고객보호정책이라고도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과 의심에 따른 보고, 객관적 금액 기준에 따른 보고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고객확인제도(CDD) =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심거래보고(STR) =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입금 또는 출금한 현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객관적 거래 사실을 자동 보고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고객확인은 고객과 거래유형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고위험 고객이나 고위험 거래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의심거래보고는 합당한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지만, 고액현금거래보고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다.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의무는 별도로 이행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강화된 고객확인은 단순한 거래실적이 아니라 고객과 거래유형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 실시한다. 고위험 고객이나 고위험 거래에는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틀린 표현: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 등급을 평가한다.
올바른 표현: 고객과 거래유형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② O
금융거래에서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의심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체 없이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 신고와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는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③ X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분할한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거래가 의심거래보고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심만으로 곧바로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하루 동안의 현금 입금액 또는 출금액이 객관적 기준금액 이상이면 고액현금거래보고도 이루어진다.
틀린 표현: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심거래보고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고, 현금거래 합계가 객관적 기준금액 이상이면 고액현금거래보고도 한다.

④ X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범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뜻에서 고객알기정책이라고도 한다.
틀린 표현: 고객보호정책이라고도 한다.
올바른 표현: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라고도 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보고 회피 목적의 분할'이라는 말만 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분할 정황에 대한 합당한 의심은 의심거래보고의 판단 사유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하루 동안의 현금 합계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다. 또한 ④에서는 고객을 보호한다는 일반적 취지와 제도의 정식 별칭인 고객알기정책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면 STR, '동일인·하루·현금 1천만원 이상'이 제시되면 CTR을 먼저 연결한다. 고객확인은 거래실적이 아니라 자금세탁 위험도를 기준으로 차등화하며, 수사기관 신고가 있어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의심거래보고는 별도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위험도는 CDD·EDD, 의심은 STR, 현금 1천만원은 CTR, 고객확인의 별칭은 KYC이다.

NoteBase

12.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채권의 준점유자란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그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인장 및 비밀번호에 의해 예금을 청구하는 자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효력(변제자 면책)이 있다.

①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예금을 지급했다면, 그 청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은 유효하다.
② 변제자의 선의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 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③ 예금 통장·증서 및 신고인감 등을 절취하여 예금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해 예금을 지급 받은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민법의 이론을 구체화하여 「예금거래기본약관」제16조(면책)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예금 지급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준점유자의 범위와 변제자인 금융기관의 선의·무과실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채권의 준점유자란 실제 채권자나 적법한 대리인은 아니지만, 변제자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유효하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은 자신을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면책)도 신고 인감과 인영을 주의 깊게 대조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지급한 경우의 면책을 규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자가 선의·무과실로 예금을 지급하면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수령권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어도 그 변제는 유효하다.

② O
여기서 선의는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모르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적극적으로 믿는 것을 뜻한다. 무과실은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다는 뜻이다.

③ X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면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통장·증서·신고인감 등을 절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준점유자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 '예금주의 대리인임을 주장해 예금을 지급받은 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
올바른 표현: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도 일반적인 거래관념상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면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다.'

④ O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는 예금거래에서 인감·서명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지급한 금융기관의 면책 문제로 구체화되며, 제시된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가 이를 면책 조항으로 규정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절취한 자'라는 표현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한 취득행위만 보고 준점유자 해당성을 곧바로 부정하기 쉽다. 그러나 준점유자 여부는 수령자의 실제 권리나 선악이 아니라 변제자의 관점에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제의 효력은 여기에 금융기관의 선의·무과실이 더해져야 인정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급받은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면 변제자의 관점에서 정당한 수령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춘 준점유자인지를 판단한다. 그다음 변제자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믿었는지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준점유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준점유자는 '권리의 외관', 유효한 변제는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이 핵심이다. 대리인 주장자도 준점유자가 될 수 있다.

NoteBase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②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확정된다.

③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거래 정보 등의 요구자가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사유로 정보제공 사실 통보를 1년간 유예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년 동안 명의자에게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의 뜻, 실명확인계좌의 소유관계, 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처리, 정보제공사실 통보의 유예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률상 효과인 '추정'과 '확정', 그리고 위법한 요구의 '거부'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실지명의 =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제 거래자의 명의이다.
추정 = 일단 명의자의 소유로 보되, 반대 증거가 있으면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 구분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해진 요구 방식에 어긋나면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한 사법절차 방해 우려를 이유로 한 최초 통보유예는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6개월까지만 인정되며, 같은 사유가 지속되면 두 차례에 한하여 매회 3개월의 범위에서 반복 유예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하므로 법의 정의와 일치한다.

② X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될 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명의자의 소유로 확정된다'
올바른 표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③ X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해진 방식에 어긋난 요구는 거부하여야 한다.
틀린 표현: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바른 표현: '법에서 허용한 예외나 요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거부하여야 한다'

④ X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사유로 최초 통보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금융회사등이 유예하여야 하는 기간은 6개월이다. 그 사유가 계속되면 두 차례에 한하여 매회 3개월 범위에서 반복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1년 유예 요청만으로 곧바로 1년간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1년간 유예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최초 통보유예는 6개월까지이며, 사유가 지속될 때 두 차례에 한하여 매회 3개월 범위에서 반복 유예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의 '확정'과 ④의 '1년'을 법률 문구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함정이다. 실명확인계좌의 소유효과는 '추정'이고, 사법절차 방해 우려에 따른 최초 통보유예의 상한은 6개월이다. ③도 신고의무가 아니라 위법한 정보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의무를 묻는 표현 바꾸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융실명법 문항에서는 먼저 실지명의의 범위를 확인한 뒤, 법적 효과가 '추정'인지 '확정'인지 구별한다. 거래정보 제공 문제에서는 원칙적 비밀보장과 법정 예외를 나누고, 위법한 요구에 대한 조치가 '신고'가 아니라 '거부'인지 확인한다. 통보유예는 최초 6개월과 반복 유예 매회 3개월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실지명의로 거래, 계좌재산은 소유 추정, 위법한 정보요구는 거부, 사법절차 사유의 최초 통보유예는 6개월이다.

NoteBase

14. 다음 금융직원 갑 ~ 병의 예금업무 처리 내용의 근거로 A ~ F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갑: 고객이 통장을 분실했다고 재발행 요청을 하셔서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재발행했어. 을: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고객이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받았어. 병: 고객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한 거래라고 의심되어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했어.

A. 금융실명법	B.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C. 금융소비자보호법	D.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E. 특정금융정보법	F.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갑)	(을)	(병)
①	B	C	A
②	B	A	E
③	C	A	F
④	D	F	E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예금업무 처리의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통장 재발급,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실제 소유자 확인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불법 차명거래 =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이다.
실제 소유자 = 고객 명의 뒤에서 해당 금융거래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다.

핵심 구분

갑의 분실 통장 재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므로 B이다. 을의 불법 차명거래 금지 내용 설명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근거하므로 A이다. 병의 계좌 신규 개설 시 실제 소유자 확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에 근거하므로 E이다. 따라서 연결은 갑-B, 을-A, 병-E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갑-B는 맞지만 을-C와 병-A가 틀리다. 금융소비자보호법(C)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 직접 근거가 아니며, 금융실명법(A)은 실제 소유자 확인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틀린 표현: 을-C, 병-A
올바른 표현: 을-A, 병-E

② O
갑의 분실 통장 재발급 및 수수료는 B, 을의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과 확인은 A, 병의 실제 소유자 확인은 E에 각각 대응한다.

③ X
을-A는 맞지만 갑-C와 병-F가 틀리다. 통장 재발급 및 수수료의 직접 근거는 우체국예금보험법(B)이고, 실제 소유자 확인은 국제조세조정법(F)이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E)의 고객확인의무이다.
틀린 표현: 갑-C, 병-F
올바른 표현: 갑-B, 병-E

④ X
병-E는 맞지만 갑-D와 을-F가 틀리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D)은 분실 통장 재발급 수수료의 제시된 직접 근거가 아니고, 국제조세조정법(F)은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 근거가 아니다.
틀린 표현: 갑-D, 을-F
올바른 표현: 갑-B, 을-A

오답 포인트

통장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예금약관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연결하면 틀린다. 특히 명의 관련 업무도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은 금융실명법, 명의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르다고 의심될 때의 실제 소유자 확인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나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업무의 핵심 동사를 먼저 본다. 통장을 분실하여 재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우체국예금보험법, 불법 차명거래 금지를 설명하는 업무는 금융실명법, 계좌 개설 과정에서 배후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업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재발급은 우체국예금보험법, 차명 금지 설명은 금융실명법, 실제 소유자 확인은 특정금융정보법이다.

NoteBase

15.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② '기업든든MMDA통장'은 법인,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치 금액별로 차등 금리를 제공한다.

③ '우체국 다드림통장' 베이직 패키지는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금융기관이 가입 대상이며 공과금 자동이체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④ '우체국 건설하나로 통장'은 건설업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우체국 건설올패스카드' 이용 고객을 우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예금상품별 가입 대상과 우대이율 적용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통장이다.
기업든든MMDA통장은 법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단기 여유자금에 예치 금액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통장이다.
우체국 다드림통장 베이직 패키지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기본형 수시입출식 통장이다.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은 건설업 종사자의 전자카드 이용을 우대하는 통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우체국 국민연금안심통장은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평균잔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상품별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② O — 기업든든MMDA통장의 가입 대상은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이고 예치 금액 구간별로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③ X — 틀린 부분은 '금융기관이 가입 대상'이라는 표현과 '공과금 자동이체 약정 시 우대이율을 제공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베이직 패키지의 우대이율 조건은 우수고객 우대와 인터넷 가입 우대이다.
④ O — 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은 건설업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우체국 건설올패스 전자카드 이용 실적이 있으면 우대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입 대상을 넓혀 '금융기관'까지 포함시키고, 다른 패키지에서 볼 수 있는 공과금 자동이체 조건을 베이직 패키지의 조건처럼 섞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상품을 '가입 대상'과 '우대 조건'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특히 다드림통장은 베이직·직장인·사업자 등 패키지별 조건이 다르므로 서로의 우대 조건을 바꿔 놓은 표현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국민연금안심은 평균잔액 30만 원, 기업든든MMDA는 금액별 차등금리, 다드림 베이직은 금융기관 제외, 건설하나로는 건설올패스 전자카드 우대이다.

NoteBase

16. 우체국 적립식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체국 다드림적금'은 우체국예금 우수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ㄴ. '2040$^{+\alpha}$자유적금'은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ㄷ. '달달하이(high) 적금'은 청년 고객(19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ㄹ. '우체국 매일모아e적금'은 목표저축액을 설정하고 달성한 경우에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적립식 예금별 우대이율 제공 대상과 실적 조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대이율은 상품별로 정한 고객 자격이나 거래 실적을 충족할 때 기본이율에 더하여 적용되는 이율이다.
우체국 다드림적금은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을 우대한다.
2040+α자유적금은 급여이체,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체크카드 이용, 월 50만원 이상 자동이체, 우수고객 등의 조건을 두며,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자체는 우대조건이 아니다.
달달하이(high) 적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고객을 우대한다.
우체국 매일모아e적금은 임의로 목표저축액을 설정하여 달성하는 조건이 아니라 '매일 자동이체'로 납입한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우대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맞지만 ㄴ은 틀리다. 2040+α자유적금은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을 우대하는 상품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ㄱ, ㄴ'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ㄱ의 다드림적금 우수고객 우대와 ㄷ의 달달하이(high) 적금 청년고객 우대가 모두 맞으므로 옳은 조합이다.
③ X —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ㄴ은 2040+α자유적금의 실제 거래실적·우수고객 우대조건으로, ㄹ은 '매일 자동이체로 납입한 합계 100만원 이상 달성'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ㄴ, ㄹ'의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④ X — ㄷ은 맞지만 ㄹ은 틀리고, 맞는 ㄱ도 빠져 있다. 매일모아e적금은 단순히 목표저축액을 설정하고 달성했다고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동이체 납입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ㄷ, ㄹ'은 'ㄱ, ㄷ'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다드림적금의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조건을 2040+α자유적금의 조건으로 옮겨 붙인 ㄴ과, 매일모아e적금의 구체적인 '매일 자동이체 100만원 이상' 조건을 막연한 '목표저축액 설정·달성'으로 바꾼 ㄹ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만 보고 추측하지 않고 우대 대상과 실적 조건을 짝지어 판단한다. 다드림은 우수고객, 달달하이는 청년고객, 매일모아e는 매일 자동이체 100만원 이상이라는 핵심어를 먼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다드림은 우수고객, 달달하이는 19~34세, 매일모아e는 매일 자동이체 100만원 이상이다.

NoteBase

17. 우체국 거치식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서민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익형 정기예금이다.

② '초록별 사랑 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정기예금이다.

③ 'e-Postbank정기예금'은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되어 있는 경우에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④ '2040$^{+\alpha}$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우체국 우수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거치식 예금상품별 가입대상, 가입채널, 우대이율 조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은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익형 정기예금이다.
초록별사랑정기예금은 종이통장 미발행과 친환경 활동·기부 참여를 우대하는 실명의 개인 대상 ESG 연계 상품이다.
e-Postbank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이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2040+α정기예금은 창구에서는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단체·법인이 가입할 수 있지만,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제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우체국 소상공인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서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익형 정기예금이다.

② O — 초록별사랑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이 가입하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친환경 활동과 기부 참여 등에 따라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③ O — e-Postbank정기예금은 실명의 개인을 위한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전용 상품이며, 가입 당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이면 우대이율 조건을 충족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라는 부분이다. 온라인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 개인사업자는 창구 가입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온라인 가입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체국 우수고객에 대한 우대이율 제공 자체는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상품 전체의 가입대상과 가입채널별 가입대상을 섞은 선지이다. 2040+α정기예금은 전체적으로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가입할 때에는 실명의 개인만 가능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금상품 설명은 '누가 가입하는가', '어디서 가입하는가', '어떤 조건으로 우대받는가'를 나누어 판단한다. 특히 2040+α정기예금은 창구 가입대상과 온라인 가입대상이 다르므로 가입채널을 먼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2040+α정기예금은 창구에서는 개인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실명의 개인만 가능하다.

NoteBase

18. 우체국 해외송금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체국은 신한은행과 제휴하여 신한은행 SWIFT 망을 통해 전 세계 수취인의 주소지로 SWIFT 해외송금을 하고 있다.

② Eurogiro 해외송금은 Eurogiro社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EDI(전자문서 교환) 방식의 국제금융 송금 서비스로 CD/ATM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③ 간편 해외송금은 소액해외송금업체인 ㈜와이어바알리社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핀테크 해외송금으로 인터넷뱅킹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④ MoneyGram 특급송금은 미국 머니그램社와 제휴한 에이전트(Agent) 간의 네트워크 정보에 의해 자금을 송금·수취한 후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서비스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체국 해외송금 서비스별 제휴망, 처리 방식, 이용 채널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WIFT 해외송금은 신한은행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SWIFT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Eurogiro 해외송금은 Eurogiro사의 네트워크와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처리하며, 간편 해외송금은 소액해외송금업체와 제휴한 핀테크 방식이다. MoneyGram 특급송금은 MoneyGram의 에이전트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우체국은 신한은행과 제휴하고 신한은행의 SWIFT망을 이용하므로 전 세계 수취인의 주소지로 SWIFT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② O — Eurogiro 해외송금은 Eurogiro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전자문서교환 방식의 국제금융 송금 서비스이며, CD/ATM은 이 서비스의 이용 채널이 아니므로 설명이 옳다.

③ X — 틀린 부분은 '인터넷뱅킹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이다. 간편 해외송금은 소액해외송금업체인 ㈜와이어바알리와의 제휴로 제공되는 핀테크 해외송금이며, 올바르게는 인터넷뱅킹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O — MoneyGram 특급송금은 미국 MoneyGram사와 제휴한 에이전트 간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수취한 뒤 수취인의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핀테크 해외송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별도 업체의 채널에서만 처리한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제휴 서비스라는 점이 우체국 인터넷뱅킹 이용 불가를 뜻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가 선지의 오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송금 문항에서는 각 서비스의 제휴기관,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용 채널을 나누어 판단한다. 특히 ‘이용 불가능’처럼 채널을 단정하는 표현은 실제 제공 채널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SWIFT는 신한은행망, Eurogiro는 EDI 네트워크, 간편 해외송금은 와이어바알리·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MoneyGram은 에이전트망이다.

NoteBase

19.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체국 영리한PLUS 체크카드'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카드로 12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며 선불교통 기능 선택이 가능하다.

② '우체국 브라보 체크카드'는 중장년 세대를 위한 카드로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불교통 기능 선택이 가능하다.

③ '우체국 우리동네PLUS 체크카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로 12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며 후불교통 기능 선택이 가능하다.

④ '우체국 건설올패스카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능과 체크카드 기능이 합쳐진 통합카드로 후불교통 기능 선택이 가능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별 대상 고객, 핵심 서비스, 발급 연령과 선불·후불 교통 기능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리한PLUS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친환경 카드이고, 우리동네PLUS는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이며, 건설올패스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기능과 체크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이다.
교통 기능은 카드명과 대상 고객만으로 추측하지 않고 상품별로 선불교통인지 후불교통인지 구분해야 한다.
브라보 일반 체크카드에는 교통 기능이 없고, 브라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후불교통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영리한PLUS 체크카드는 환경부 인증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카드이다. 12세 이상 발급할 수 있고 티머니 선불교통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X — 중장년층을 위한 카드이고 해외원화결제(DCC)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맞지만, '선불교통 기능 선택 가능'이 틀렸다. 브라보 일반 체크카드는 교통 기능이 없으며, 교통 기능이 필요한 경우 브라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에서 후불교통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③ X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12세 이상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맞지만, '후불교통 기능 선택 가능'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선불교통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④ X —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기능과 체크카드 기능을 결합한 통합카드라는 내용은 맞지만, '후불교통 기능 선택 가능'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선불교통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④는 카드의 대상과 핵심 용도를 맞게 제시한 뒤 교통 기능만 바꾸어 놓았다. 특히 '중장년층 카드이므로 선불교통', '건설근로자 카드이므로 후불교통'처럼 대상 고객만 보고 교통 방식을 추측하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를 '대상 고객·핵심 서비스·발급 연령·교통 방식'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앞부분이 맞더라도 선불교통과 후불교통이 뒤바뀌었으면 선지 전체를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영리한PLUS·우리동네PLUS·건설올패스는 선불교통, 브라보 일반은 교통 기능 없음, 브라보 하이브리드는 후불교통이다.

NoteBase

20. 다음 고객이 가장 높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예금상품은?

○ 나이: 65세
○ 거주지: 읍·면 단위 지역
○ 고객 등급: 우체국예금 우수 고객
○ 우체국 체크카드: 매월 30만 원 이상 사용
○ 자동이체 약정: 공과금 3건, 우체국보험 보험료 납입 5건 약정
○ 공무원연금: 매월 200만 원을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수령

① 챔피언 정기예금
② 이웃사랑 정기예금
③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
④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객의 나이, 거주지, 거래등급, 체크카드 실적, 자동이체 및 연금수령 조건을 우체국 예금상품별 우대요건에 대입하여 가장 많은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찾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고객은 65세로 시니어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핵심 사실 2: 공무원연금 200만원을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받고 있다.
핵심 사실 3: 우체국 체크카드를 매월 30만원 이상 계속 사용하므로 상품의 실적 산정기간에 누적 이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핵심 사실 4: 공과금 3건과 우체국보험 보험료 납입 5건을 자동이체로 약정했으므로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의 자동이체 우대요건에도 적용된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여러 우대항목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우대이율은 상품이 정한 연령·거래실적·이체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기본이율에 더해지는 이율이다.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은 만 50세 이상, 우체국 계좌를 통한 연금 또는 급여이체,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 등을 각각 우대요건으로 두므로 이 고객의 조건을 여러 항목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적용 기준

상품 이름과 고객의 단서가 하나만 맞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충족하는 우대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비교한다. 이 고객은 시니어 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체크카드 이용뿐 아니라 공과금과 우체국보험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에 관한 우대요건도 충족하므로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에서 가장 높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챔피언 정기예금은 우수고객 등급에 따른 우대는 받을 수 있지만, 제시된 연령·연금이체·체크카드 이용 조건을 시니어 상품처럼 복수의 우대항목으로 합산하는 상품은 아니다. 틀린 표현 '가장 높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챔피언 정기예금이다' → 올바르게는 '우수고객 등급에 따른 우대는 가능하지만 이 사례에서 가장 높은 우대이율의 상품은 아니다'이다.
② X — 읍·면 지역 거주는 이웃사랑 정기예금의 농어촌 주민 우대 대상이 되는 단서이지만, 거주 사실만으로 시니어 상품에서 충족하는 복수의 우대항목보다 높은 우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가장 높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이웃사랑 정기예금이다' → 올바르게는 '읍·면 지역 거주에 따른 우대 대상은 되지만 이 사례의 최고 우대상품은 아니다'이다.
③ O — 고객은 65세이고,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우체국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의 연령·연금이체·체크카드 이용 우대요건을 복수로 충족하여 제시된 상품 중 가장 높은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④ X —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개인이 공무원연금을 우체국 계좌로 수령한다는 이유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틀린 표현 '공무원연금을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수령하므로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적합하다' → 올바르게는 '공무원연금 수령 실적은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의 연금이체 우대요건에 해당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우수 고객', '읍·면 지역', '공무원연금' 같은 한 단어만 보고 상품명을 바로 고르면 틀리기 쉽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가입자격으로 오해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고객 조건을 연령, 거주지, 고객등급, 카드실적, 자동이체, 연금이체로 나눈다. 그다음 각 상품의 가입대상과 우대요건을 구분하고, 실제 충족하는 우대항목을 합산하여 가장 큰 상품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 연금·급여이체 + 체크카드 실적'을 함께 확인한다.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서로 다른 대상이다.

NoteBase